보도시점 2025. 10. 28.(화) 14:00 배포 2025. 10. 28.(화) 11:00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7년 이후 과세당국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절차 규정
- 금융정보 교환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추가, 저위험계좌 보고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재부고시, 이하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재부고시, 이하 '금융정보자동교환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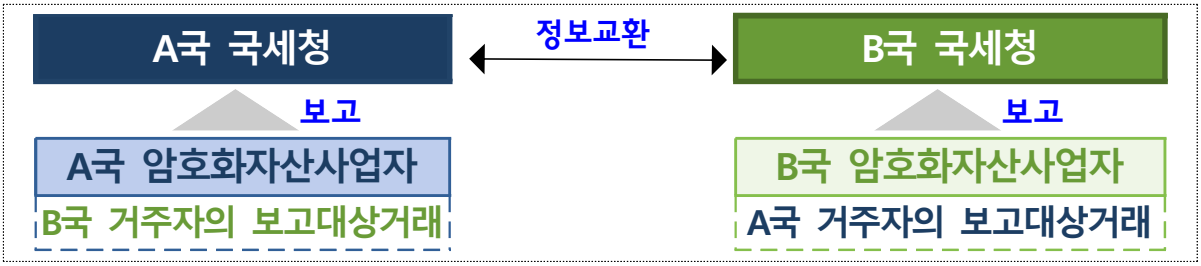
*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연도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 하며, 첫 정보교환은 '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7년 이행 예정이다.

국가간 암호화자산거래정보 자동교환 방식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교환대상으로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한다.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행정예고(10.28일~11.17일)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책임자	팀 장 박정주 (044-215-4670)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조성아 (scho@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조세정보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 주요내용**

1.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1 적용대상

○ **(보고대상 자산)** 비거주자가 보유한 제외 대상* 이외의 **모든 암호화자산**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 등 포함)

* ①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②특정전자화폐상품, ③지불·투자 불가능 자산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해 보고·교환함에 따라, 암호화자산 보고·교환에서 제외

○ **(보고의무사업자)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와 연결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거래소, 지갑서비스사업자, 브로커 등)

* 세법상 거주자, 국내법에 따라 설립·등기된 단체, 국내에서 관리되는 단체 등

2 보고대상정보: 이용자 정보 + 거래정보(교환거래, 암호화자산의 이전)

○ **(이용자 정보)** 개인 성명, 주소, 거주지, 납세자번호, 출생일 등
단체 개인과 동일한 정보 + 실질적지배자 정보

○ **(거래정보)**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암호화자산 종류별 **거래내역**

- 암호화자산 취득·처분·이전 관련 **총액, 총 단위 수 및 거래 건수**

3 실사 절차: 거래소 등 사업자가 이용자 대상 실사

○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에 대해 **유효한 본인확인서 수취** 필요
(단체이용자의 경우 실질적지배자의 본인확인서도 수취 대상에 포함)

○ **보고의무사업자**는 수취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유효성 확인** 의무

4 보고 의무

○ **전년도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4月)

※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협정가입 상대국과 9月까지 정보교환 이행

2.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

1 적용대상 확대: 보고의무자 및 보고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특정전자화폐상품** 및 **암호화자산**을 취급·관리하는 단체를 **금융거래회사등**에 포함
(☞ 수탁기관·예금기관·투자단체 관련 규정 개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특정전자화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계좌를 **보고대상계좌**에 포함 (☞ 예금계좌 규정 개정)

2 보고대상정보 추가

○ 계좌보유자·실질적지배자의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계좌유형**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

3 보고의무 부담 완화

○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보유,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를 **보고제외 계좌**에 추가